

지부결성에 대한 규정

개정 1983.01.09

" 1984.10.23

" 1991.10.31

" 2010.01.29

" 2013.05.30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 시·도지회 산하에 지부 조직을 강화하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지부결성 기준)

- ① 행정구역에 의한 각 시·군·구 단위에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.
단, 지회의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구역을 달리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지부 결성을 위한 회원 수는 5명 이상(유권회원 수 기준)이어야 한다.
- ③ 전항의 회원자격은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며 해당 지부 구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.

제 3조(결성절차)

- ① 지부를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소속 지회장의 승인 하에 결성총회를 소집하여 지부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지부결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 4조(지부결성 승인신청) 제3조 2항에 의거, 지부결성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, 소속 지회장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제출한다.

1. 지부결성 승인신청서
2. 결성총회 회의록
3. 지부장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

4. 회원명부

제 5조(결성 승인여부 통지기한)

① 협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성 승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성절차 또는 정관,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지부운영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에 의한 승인여부의 통지는 승인신청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 6조(지부결성의 제한) 협회장은 신규 지부의 결성승인으로 소속지회 및 기존 지부의 존립을 해하거나 새로운 지부의 운영이 심히 곤란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부결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7조(지부 업무중지) 협회장은 지부가 정관, 제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그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거나 지부장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8조(지부의 결성승인 취소)

① 협회장은 지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지부에 대한 결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불실한 방법으로 결성승인을 받은 때
2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장의 조치로서 시정되지 아니할 때
3. 재적 회원 또는 지회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유권 회원수(결격사유 없는 회원수)가 1년 이상 계속하여 3명 미만일 때

② 전항 각호에 의하여 결성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은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회 및 지부에 통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 및 지부 결성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구 “지부운영규정”에 의하여 1991년 1월 11일 이사회에서 인준한 지부 및 지부장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지부결성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